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4477 무고
피 고 인 A
검 사 이진순(기소), 김민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신민수
판 결 선 고 2026.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9.경 클럽에서 B(남, 26세)를 처음 만나 알게 되어 같은 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성관계 후 B가 자신을 집에 데려다 주지 않는 등 서운하게 대하는 것에 화가 나 B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6. 19. 09:44경 대구 중구 C 앞 노상에서 112에 '성폭행당한 것 같다' 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완력을 사용하여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피해 진술을 하고, 2023. 8. 6. 18:12경 대구 중구 경



삼감영길 55-0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B가 가슴과 젖꼭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여 B에게 여러 번 하지 말라고 하고, 손을 밀어 저항하였다. B가 목을 조르고, 뺨이나 엉덩이를 때리고 머리채도 잡아 당겨 무서워서 저항을 하지 못했다.'라는 등 B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B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B가 피고인의 동의하에 엉덩이를 때리는 행동을 하였을 뿐이고, B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완 수사 이행 - 실제 조서 사본 첨부) - 진술조서 1회, 진술조서 2회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 불송치 결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112신고내역 확인) -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낮선 장소인 피해자의 집에서 잠이 깬 피고인은 술에 취했었던 탓에 기억이 불명확하여 몹시 당황스럽고 무서운 마음이었는데 성행위 전에 B가 피고인의 목을 졸랐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고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다고 기억하여 B를 강간죄로 신고하였을 뿐 신고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고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B를 강간죄로 신고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B는 피고인과 클럽에서 만나서 연락처를 교환하고 귀가하였는데 피고인이 B에게 '속이 좋지 않다, 택시를 못 타겠다, 와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는 클럽 부근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났고 둘이 함께 B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 B는 피고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간 다음부터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켜서 성관계를 마칠 때까지 모든 상황을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강간죄로 신고한 때로부터 3일이 지난 2023. 6. 22. 최초로 경찰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강간 피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 전화하니 B였고 피고인의 위치를 물어봐 알려주어 클럽 근처에서 다시 만났다. B는 피고인이 속도 안 좋고 구두 때문에 발이 아프다고 하자 5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갔다가 괜찮아지면 가라고 하였다.

② 오피스텔 22층에 있는 B의 집에 가서 대화를 하다 발이 괜찮아져 간다면서 일어나자 가지마라면서 어깨를 잡아끌면서 침대에 앉히고 갑자기 키스를 하고 하였다. 하지 말라고 하자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긴 다음 손으로 목을 7초가량 조르고 계속 좋다고 말하도록 시켰다. 아프고 무서워 좋다고 말하였고 이후 성기를 삽입하고 뺨을 때리고 머리채도 잡아당겼다. 계속 싫다고 그만하라고 하였지만 멈추지 않았고 성관계 중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였다.

③ B가 자기 손에 사정을 한 다음 화장실로 가서 5분가량 씻는 소리가 났고 그



사이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다. B에게 1층까지 같이 가 달라고 말했는데 B가 2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곤하다며 집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감정이 북받치고 화가 나서 B 집의 벨을 눌렀고 B가 나오길래 "지금 무슨 짓을 한 지는 아냐? 나한테 전혀 미안하지 않냐?"라고 따졌다. B와 함께 1층으로 내려가서 실랑이를 계속 하다가 말이 안 통할 것 같아 그 자리에서 112신고를 하였다.

3) 피고인은 B가 갑자기 키스를 시작으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목을 졸라 두려움에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한 채 B가 시키는대로 말하고 행동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지만 녹음된 당시의 상황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녹음된 내용에 의하면, 성관계 개시 과정에서 B의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 언행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눈을 감고 있는 B를 향해 "왜 자냐고, 나 불러놓고"라고 말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성행위를 하게 되었고, 성관계 도중에도 B가 피고인의 동의 아래 성적 쾌감을 높이려 피고인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동은 있었지만 B가 피고인에게 좋다고 말하라고 압박 지르거나 피고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동을 한 것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이 B의 폭행으로 두려움을 느껴 반항하지 못하고 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성관계를 마치고 B가 씻으러 화장실에 간 동안에도 피고인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B가 씻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피스텔 1층까지 같이 가 달라고 말한 것이나 B가 집으로 다시 들어가자 벨을 눌러 B를 불러내는 것 등의 행동은 몹시 이례적이고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B는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지만 음주운전이 됨을 이유로 거절하였는데 집 밖으로 나갔던 피고인이 다시 문을 발로 차서 문을 열어주자 B의 태도를 지적하며 화를 내고 결국 112신고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의 진술이 피고인의 성범죄 피해를 당한 직후에 보이는 반응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들과 강간 피해 신고를 한 이유를 잘 설명한다고 보인다.

5) 피고인의 신고내용과 피해 진술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술에 취한 피고인을 B가 준강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가 아니다. 피고인의 피해 진술 어디에서도 술에 취한 탓에 자신의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6) 나아가 피고인은 B의 집에서 자다가 갠 적이 없으므로 낯선 장소에서 잠이 깨어 당황스럽고 무서운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의 피해 진술에서 확인되는 신고 경위와도 어긋난다.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증상은 기억의 형성과는 무관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무고죄는 국가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며,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범죄이다. 특히 성범죄는 직접 증거의 대부분이 피해자 진술이고,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것만으로도 사회적 평판이 크게 훼손되어 피무고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B를



강간죄로 무고하였고, 피무고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고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되어 피무고자 B의 법적 안정성에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종찬 _____